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보 http://www.seo.incheon.kr/
선람	기관의장	제1969호 2026.1.12.(월)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

○인천광역시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58호 인천광역시서구당하노인복지관 직인등록 공고 ——— 9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정책과 [032-560-4143]**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52(경서동)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1.12.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6-1-12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154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52 (경서동)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6-1-12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9-37 (백석동)	건물멸실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2	인천광역시 서구 거월로 9-35 (백석동)	건물멸실	20220221	인근의 자연부락인 거월을 지나는 도로임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1. 1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62, 팩스 032-560-274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검단기획행정국장

2의3. 검단경제보건국장

2의4. 검단안전환경도시국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2의2. 분구추진단장 <신 설> <신 설> 3. ~ 8. (생 략)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2. (현행과 같음) 2의2. 검단기획행정국장 2의3. 검단경제보건국장 2의4. 검단안전환경도시국장 3. ~ 8. (현행과 같음)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제2026-008호

인천광역시서구당하노인복지관 직인등록 공고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당하노인복지관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인관리규정 제9호(공고)에 의거하여 신조직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음

1. 등록직인 사용개시일: 2025년 11월 7일
2. 직인등록사유: 개관에 따른 직인등록
3. 직인인영
   가. 등록직인: 인천광역시서구당하노인복지관장인
   나. 수 량: 1종 (신조1)
   다. 공 고 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공보

직 인 명	인천광역시서구당하노인복지관장인		
종 류	■ 직 인 □ 기타직인	관리부서	당하노인복지관
신조직인		등 록 일	2026년 1월 12일
		최초사용일	2025년 11월 7일
		재 료	흑인조
		교부사유	행정상 필요에 따른 신조